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ㅇ 또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나.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3)
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3(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8조의3(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6.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

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

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6. 13., 2024. 12. 20.>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

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6년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확정내시 예산 424,000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4%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재원은 제공된 비용추계 자료의 국비·시비 분담 구조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를 적용함.

○ 향후 국비 지원 규모, 사업량 및 운영기준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2027년 440,960천원, 2028년 458,598천원, 2029년 476,942천원, 2030년 496,020천원, 2031년 515,860천원으로 추계되며, 향후 5년간 총 소요액은 2,388,380천원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조달함.

○ 추계기간 동안 총 소요액 2,388,380천원 중 국고보조금 1,194,190천원, 시비 1,194,190천원을 각각 확보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추계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424,000	440,960	458,598	476,942	496,020	515,860
국 비	212,000	220,480	229,299	238,471	248,010	257,930
시 비	212,000	220,480	229,299	238,471	248,010	257,930

◎ 추계근거: 2026년 확정내시 예산을 기초로 연 4% 증가율 반영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명 숙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노인장애인과), 044-300-38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7. 10.]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3. 7. 10.>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신설, 2023. 7. 10.>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10.>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 7. 10.]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

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기준 및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및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13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
3.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종사자 양성 및 교육
5.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 보완, 시민참여 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14조(지도·감독)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